

##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1.
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0. 10. 13.
- 제출자: 칠곡군수
- 회부일자: 2020. 10. 15. 회부
- 상정일자: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(2020. 10. 21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출설명의 요지

- 제출설명자: 기획감사실장 장재석

- 제출이유

통합관리기금이 여유자금 부족 등 실효성이 없어 실제 운용되지 않고 2019. 12. 31.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며, 2020년 6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일반회계 및 기금의 자금 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추후 필요에 맞춰 기금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「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

「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지영)

○ 「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」은

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및 기금의 자금 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필요에 맞춰 기금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○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